

장례식장영업 폐업신고서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 즉시
신고인	성명(대표자) / 법인명(법인등록번호)		생년월일
	주소		
	명칭	신고번호 / 영업개시일	
	소재지		
폐업일			
폐업사유			
장례식장영업 신고 확인증 분실사유			

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에 따라 장례식장영업의 폐업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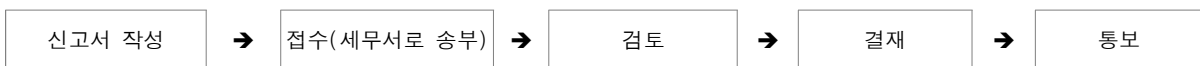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신고인 제출서류	장례식장영업 신고 확인증(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작성해야 합니다)	수수료 없음
----------	--	--------

참고사항

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제6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 송부해야 합니다.

처리절차



신고인

처리기관: 특별자치시·도, 시·군·구